

## 광명시 청소년 위원회 조례

제정 2011. 11. 8 조례 제1807호  
일부개정 2013. 8. 1 조례 제1936호(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)  
일부개정 2014. 10. 17 조례 제2035호  
일부개정 2022. 12. 26 조례 제2925호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 기본법」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수렴과 참여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22. 12. 26]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청소년”이라 함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22. 12. 26]

제3조(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광명시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광명시 청소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2. 12. 26>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<신설 2022. 12. 26>

1. 광명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 대한 의견 제안 및 자문
2. 여러 가지 청소년 사업 및 교육경비에 관한 예산편성 의견 제안
3. 그 밖에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안

[제목개정 2022. 12. 26]

제3조의2(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,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.

③ 정기 회의는 상·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,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

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2. 12. 26]

제4조(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동 지원을 위해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(이하 “참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광명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청소년의 권리·인권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
2.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
3.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안

[전문개정 2022. 12. 26]

제5조(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. <개정 2022. 12. 26>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 <신설 2022. 12. 26>

③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 <신설 2022. 12. 26>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신설 2022. 12. 26>

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 12. 26>

[제목개정 2022. 12. 26]

제6조(위촉) ① 위원회와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, 성별,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. <신설 2022. 12. 26>

② 위원회와 참여위원회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2. 12. 26>

③ 위원회와 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각 위원회 활동은 각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. <신설 2022. 12. 26>

④ 위원회와 참여위원회 위원은 중복 위촉이 가능하다. <신설 2022. 12. 26>

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12. 26>

⑥ 사임이나 위촉 해제로 인해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2. 12. 26>

제7조(위촉 해제) ① 위원회와 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12. 26>

1.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 및 수시 회의에 불참한 경우
2.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
3.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
4.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“특별한 사유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천재지변
2.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
3. 본인 질병과 사고
4.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(2촌 이내)의 상(喪) 또는 결혼
5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, 각 위원회 업무를 총

판한다. <개정 2022. 12. 26>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 삭제 <2022. 12. 26>

제10조(의견 수렴)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와 참여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12. 26>

② 위원회와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,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12. 26>

제11조(경비 등) 위원회와 참여위원회의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·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2. 12. 26]

제12조(보상)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, 문화탐방·국제교류 활동 참여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13조(위탁) 시장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4. 10. 17]

제14조(운영 규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22. 12. 26>

[중전 제13조에서 이동 <2014. 10. 17> 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3. 8. 1 조례 제1936호,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10. 17 조례 제203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 12. 26 조례 제2925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횡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위  
촉된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 횡수를  
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횡수를 합산한다.